

제 1450 호

1989. 9. 19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고 건
편집인: 공 보 관 유 권 수
전화: 731-6111-3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35-3337

시 보

차 례

- ◎ 조 계
 - 제2500호 서울특별시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 3
- ◎ 고 시
 - 제425호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보호구역지정 3
 - 제426호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지정고시 3
 - 제428호 서울특별시두형문화재지정 4
- ◎ 공 고
 - 제759호 비료생산업허가일부품목폐업신고수리 4
 - 제7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공람공고 6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767호	윤지2가구역제6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을위한공람공고	6
제770호	주택개발제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임부변경공람공고	7
제771호	공공용지저하추차장건설및운영사업차선경공고	7
제773호	보라매공원시설(운동시설)제1차(수영장)공사완료공고	8
제776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	8
제787호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공람공고	9

● 구 고 시

제 1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실시계획인가	9
제 1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0
제 20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0
제261호	하천점용(도시가스관매설)허가	10

● 구 공 고

제 8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공람공고	11
제 49 호	도시계획사업(운동장)서행허가(변경)에따른공람공고	11
제 88 호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	12
제 89 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12
제104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2
제124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	13
제125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	13
제126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	14
제26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서행허가에따른공람공고	14

● 사업소고시

제23호	하천점용허가	15
제24호	하천점용허가	15
제25호	하천점용허가	16
제26호	하천점용허가	16

● 사 령

조 례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9. 9.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서울특별시조례제2500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서대문도서관 단 다음에 고척도서관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목록

고척도서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산17-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425호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보호구역지정

문화재 보호법 제8조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89. 9.

서울특별시장

문 화 재			보 호 구 역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 재 지	면 적	소 유 자
유형문화재	70호	충숙이공신도비	노원구 하계동 32	1,213㎡	벽진이씨종중
			" 32-1	38㎡	"
			" 33	864㎡	"
			" 46	532㎡	"
			" 47	59㎡	"
			" 산16-1	8,926㎡	"
			" 22-1	146㎡	노 원 구
			" 46-1	359㎡	"
			" 40-1	110㎡	"
			계	9필지	12,247㎡

●서울특별시고시제426호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지정고시

문화재보호법 제55조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1989. 9.

서울특별시장

C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목록						
종 류	지정번호	명 칭	지정물건	소재지	구조및규모	관리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2호	특도수원지 제1경수장	송수실1동 완속여파지 1개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42	송수실1동 312.4㎡ 완속여파지 1개소 443㎡	특도수원지 사무소장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3호	파고다공원 팔각정	관가정1동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38	1동 160㎡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고시제428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지정

문화재 보호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이등 고시함.

1989. 9. 16.

서울특별시 장

- 지 정 내 역 -

종별및지정번호	명 칭	보 유 자 인 정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서울특별시 무 형문화재 제3호	송과다리밭기	한 유 성	남	1908. 7.23	송과구 석촌동 142
		(韓有星)			
		문 육 지	남	1913. 5. 8	송과구 가락동 가락아 파트 127-310
		(文陸地)			
		이 충 선	남	1901. 9.15	강남구 삼성동 40-1
(李志善)					
김 일 록	남	1909. 4.30	송과구 삼전동 178-7		
(金日祿)					
한 천 복	남	1912. 4.24	송과구 석촌동 122-4		
(韓千福)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759호

비료생산업허가일부종목폐업신고수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시
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료
생산업허가 일부종목에 대한 폐업신고가
있어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리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9. 9. 5.

서울특별시 장

- 허가번호 : 01-가-복합3-2
01-가-복합4-2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제일제당(주)대
표이사 안 시 환
- 사업장 소재지 : 강서구 가양동 92
- 폐업신고수리 년월일 : '89. 9. 5.
- 폐업신고수리 비료의 종류 및 품목
: 별첨과 같음

폐업신고 수리 비료의 종류 및 품목

허가번호	비료의종류	품목	허가년월일	폐업수리	비고
01-가-복합3-2	제3종복합비료	10-8-8-0.3-2-10	'86. 7. 21	'89. 9. 5	
		10-4-6-0.3-2-10	"	"	
		12-0-12-10	'88. 1. 29	"	
		8-5-6-0.3-2-10	'86. 7. 21	"	
		6-4-3-0.3-2-10	"	"	
		8-3-16-0.3-2-10	"	"	
		12-13-11-0.3-2-10	"	"	
		14-0-8-0.3-2-10	'88. 1. 29	"	기준미달비료로 경고와공시 폐업신고수리
		10-12-12-0.3-2-10	"	"	
		5-14-10-0.3-3-10	'87. 2. 2	"	
01-가-복합4-2	제4종복합비료	4-4-7-0.3-1-0.1-2	'88. 1. 29	"	
		2-8-2-0.1-0.1	'88. 5. 6	"	
		2개 품목			
계		13개 품목			

제150호

11

단

1989. 9. 19

20-5

●서울특별시 공고 제7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공람공고

1.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입안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고 아래장소에서 14일간 일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조서

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1989.9.6 ~ 1989.9.19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정비과

1989. 9. 6

서울특별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중로	2	38-1	15m	950m	가회동 (중1-33)	해화동 (중3-87)	일부구간 위치변경및 폐지
변경	중로	"	"	"	120m	명륜동3가 40-8	해화동 (중3-87)	노역변경
	소로			6-8m	840m	가회동 (중1-33)	명륜3가 55-1	

●서울특별시공고제767호

울지로2가구역제6지구재개발사업 시행인가변경을위한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923호(86.12.23)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되고 동고시제668호(87.9.19)로 변경인가된 울지로2가구역 제6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이상영 외 2인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가 변경신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가 변경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89. 9. 9

서울특별시

번호	구분	변경전	변경후
1	주원사무소의소재지	서울시 중구 삼각동 103-3	서울시 중구 장교동1번지 (장교빌딩 2601호)
2	시행자의주소및성명	서울시동작구사당동52-3 이삼영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8-39 이용주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302-86 (빌라편선303호) 송준자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우기빌개발 대표이사 손서호)

번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3	사업시행기간	1985.12.23-1985.12.31	1985.12.23-1991.12.31
4	규 약 가. 제6조 (주연사쿠소의 소재지)	서울시 중구 삼각동 103-3	서울시 중구 장교동1번지 (장교빌딩2601호)
		이 삼 영	(취기빌개발)
5	토지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별 첨 (생략)	

나. 변경사유 : 자금력 부족에 의한 시행자 변경 및 공기부족

◎서울특별시공고제770호

주택개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
일부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73호('79.4.26)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주택개발 재개발
사업 육인구역내 녹지대상 토지에 대
하여 일부 변경을 위한 도시개발법
제41조와 제31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58조 관계 규정에 의거 3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서류는 종로구청 주택과에 비치
하여 토지등 소유자에게 개별 농지하
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1989. 9.

서울특별시

가. 명 칭 : 주택개발재개발사업 관리
처분계획 일부변경 공람공고

나. 위 치 : 종로구 육인동47-185

다. 면 적 : 62,822㎡

라. 시행자 : 서울특별시

마. 관리처분계획 변경내용

구 분	중권의 토지				처 분 내 용	비 고
	동 명	지 번	지 속	면 적		
변경전	육인동	47,135	대	112.7㎡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해당지(녹지대상 토지)	
변경후	육인동	47-185	대	87.7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해당지(청산대상 토지)	

◎서울특별시공고제771호

공공용지하주차장건설및운영
사업자선정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592호에 따라 공

공용지 지하주차장건설 및 운영사업자들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989. 9. 9

서울특별시

1. 사업의 종류 : 공공용지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2. 사업구별 선정사업자 및 건설규모			
사업지	위치	선정사업자	건설규모
세종로미관광장	종로구 세종로 80-1일대	선경건설(주) 대표이사 김 중 현	자주식 지하5층 연 45,655㎡ 1,120대
중요광장	종로구 훈정동 100일대	삼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 기 석	자주식 지하4층 연 53,680㎡ 1,442대

<p>3. 사업자 이행사항</p> <p>가. 선정된 기본설계 및 별도 홍보하는 보완사항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여 89.11.28까지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득하여야 함</p> <p>나. 제출하는 실시설계서는 당시의 기술심사를 받아야함</p> <p>●서울특별시공고제773호</p> <p>보라매공원공원시설(운동시설)제1차(수영장)공사완공고</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442('87.6.20)호로 사업 시행 허가되고 동 고시 제26호('88.1.13)로 변경 허가된 보라매공원 도시계획 사업 공원시설(운동시설)설치 제1차 공사(수영장)에 대하여 동 사업이 준공되었기 도시계획법 제57조 2항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공원과 및 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9. 9. .</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청</p> <p>가. 사업시행지: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보라매공원)</p> <p>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 사업(공원시설)</p> <p>다. 사업의 명칭: 보라매공원시설(수영장)설치</p>	<p>라. 사업규모</p> <p>○면적: 10,160㎡</p> <p>○건축물: 5동(건평: 1,410.37㎡ 연면적 2,016.32㎡)</p> <p>○공작물: 48기</p> <p>마. 사업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53번지 (주)한양건축 대표 현종락</p> <p>바. 사업착공일 및 완료일</p> <p>○착공일: '87. 6. 19.</p> <p>○완료일: '89. 8. 31.</p> <p>●서울특별시공고제778호</p> <p>도시계획안공람공고</p> <p>1. 우리시에서 일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일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p> <p>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가. 공람기간: 1989년 9월13일 - 1989. 9월 27일(14일간)</p> <p>나. 공람장소: 동작구청 도시정비과</p> <p>다. 관련도서: 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p> <p>3. 법근거: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p> <p style="text-align: right;">1989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청</p>
--	---

구분	시설명	위 치	규 모	비 고
변경	도로	상도동 368-16-상도1동 706	B=20 ^m → 25 ^m L=750 ^m	특원확장
"	"	상도동 201-171-상도동 204-172	B=8 ^m → 6 ^m L=400 ^m	특원축소

◎서울특별시공고제787호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공람공고

1.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입안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고 아래 장소에서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1989. 9. 15 1989. 9. 25

나. 공람장소: 종로구청 도시정비과
1989. 9. 15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도시계획 시설변경	학교(보성중 교교)	종로구 혜화동 1-1일대	37,420.5	31,090.0	감6,350.5㎡일부폐지

구 고 시

◎성북구고시제15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인가

1. 성북구 공고 제7호(89.8.29)로 공람공고한바있는 장위2동 110-61번지의 1건 하수도 개방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9. 12

성 북 구 청 장

1)사업시행자: 성북구 장위동 60-3번지

2)사업의종류및명칭: 장위2동 110-61번지의1건 하수도 개방공사

3)사업의규모: ○아스팔트포장 A=4.4
B=8^m L=55^m
○암거 1.5^m×1.0^m L=55^m

4)사업시행자: 성북구청장

5)사업확공 및 준공예정일

○착 공: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준 공: 89.12.30

6)수용또는사용할 토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7)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생략

8)가타사항: 의견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고시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바랍니다.

<p>●성북구고시제16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p> <p>1. 성북구청 공고 제6호(89.8.28)로 공람공고한바있는 석계역-석관고교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1989. 9</p> <p>성 북 구 청 장</p> <p>가. 사업시행지: 성북구 석관동135-3~116-3</p> <p>나. 사업종류및명칭: 석계역-석관고교간 연결도로 개설공사</p> <p>다.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 폭=10^m, 연장=365^m</p> <p>라. 사업시행자: 성북구청장</p>		<p>다. 사업착수및 준공예정일</p> <p>○착 공: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p> <p>○준 공: 89.12.31</p> <p>바.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p> <p>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생략</p> <p>아.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생략</p> <p>●성동구고시제20호</p> <p>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p> <p>서울특별시 고시 제736(88.9.8)호로 고시한 아래사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1989. 9. 5</p> <p>성 동 구 청 장</p>		
<p>변 경 전</p> <p>1. 사업 명: 민영주택건설사업</p> <p>2. 사업주체: 한전사근동 직장주택조합 장태순</p> <p>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p> <p>가. 위 치: 성동구 사근동 233-2의 8</p> <p>나. 대지면적: 9,301.55[㎡]</p> <p>다. 건축연면적: 25,622.1[㎡]</p> <p>라. 규 모: 아파트 15층 2동 270세대</p> <p>4. 사업시행기간: '88. 9 - '89. 9. 30</p>		<p>변 경 후</p> <p>좌 동 좌 동</p> <p>성동 사근동199 9,303.0[㎡]</p> <p>좌 동 좌 동 좌 동</p>		
<p>●노원구고시제261호</p> <p>하천점용(도시가스관매설)허가</p> <p>하천법 제25조 1항,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제5호 규정에 의거</p> <p>1989. 9. 11</p> <p>노 원 구 청 장</p> <p>- 다 음 -</p>		<p>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 이를 같은법 시행령22조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p>		
허가일자	위 치	점용면적	허가내용	수허가자
'89. 9. 11	노원구 상계동 754-1, 754-2 당현천하상	도시가스관 매설	◎공작물 내역 D=350 ^{mm} L=147 ^m	한일개발(주) 대표이사 전광수

구 공 고

●성북구공고제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246호(76.9.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및 지적승인되고, 서울시 고시 제565호(86.8.7)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되어 서울시 고시 제612호(86.8.23)로 지적고시완료, 성북구 공고 제2호(89.5.11)로 공람하고 성북구 고시제4호(89.6.8)로 실시계획인가된 정릉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서울시 고시 제131호(89.3.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고, 성북구 고시 제1호(89.5.6)로 지적고시된 구간에 대하여 추가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로져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공람 공고합니다.

2. 토지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건물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공람장소: 성북구청(토목과,건설관리과)
 나.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989. 9.

성 북 구 청 장

- 1)사업시행지(추가): 경동동 522~506-41
- 2)사업의종류및명칭: 변동없음
- 3)사업의규모(추가): 도로폭장 B=6m~8m, L=200m
- 4)사업시행자: 성북구청장
- 5)사업착수및 준공 예정일: 변동없음
- 6)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소재지.

지면,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생략

- 7)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 주소:생략
- 8)기타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공고제49호

도시계획사업(운동장)시행허가(변경)에 따른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04호(76.12.16)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운동장)시행허가(변경)에 따른 공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도시계획법제25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정비과(734-28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니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때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89. 9

종 로 구 청 장

가.사업시행지: 종로구 구기동 151번지의 3필지
 나.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운동장)시행
 다.사업의 명칭: 미도파체육관 부대시설 및 수영장공사
 라.시행면적: 건축면적1982.4㎡-3,493.58㎡
 마.사업의 착수년월일: 89. 9 -90. 6
 바.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중구 남대문로2가 123번지 미도파(주)
 대표이사: 이상열
 사. 토지건물의 조서: 사업시행자 소유 (조선생략)

<p>㉔구로구공고제88호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 주택 건설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의거, 아래의 같이 영업 정지 처분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1989. 9. 5. 구로구청장</p>
--	---

등록번호	상호및대표자	영업소소재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조 치 사 항
89-293	공간산업(주) 김 상 길	구로구 구로동 625-43	기술자감근제 영수증미제출	주택건설 촉진법7조	영업 정지 1월 (89. 9. 5-10. 4)

<p>㉔구로구공고제89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주택 건설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의거 아래와 같이 말소 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1989. 9. 5. 구로구청장</p>
--	---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말소사유	근 거 법 령	말소일자
84-120	(주)영일주택	오영철 이운영	구로구 시흥동 949-10	기술자 미확보	주택건설 촉진법제7조	'89. 9. 5
86- 95	림팔개발(주)	양시평	구로구 시흥동 987-12	무단전출	"	"
86-395	(주) 흥 옥 주택건설	박병옥	구로구 시흥동 991-9	"	"	"
86-391	평해주택건설(주)	이영리	구로구 구로동 607-1	"	"	"
87-168	송정주택건설(주)	이용길	구로구 개봉동 403-198	"	"	"

<p>㉔관악구공고제104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가 결정 지적 승인한 다 음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 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2항 및 동시행령 제27조2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가) 사업개요</p>	<p>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 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기록과및 건설 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공고 기간 내 공람장소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989. 9. 18. 관악구청장</p>
--	---

사 업 시 행 지	사 업 종 류 및 사 업 명 칭	규 모	확공	준공	결정고시일자	지적고시일자
관악구 신림11동 587-122~587-3	도시계획사업(신림11동 587 주변 도로개설 공사)	B=4m L=120m	89. 9	89.12	서고제207호 (73.12.24)	서고제207호 (73.12.24)

- 나) 사업의 시행자: 관악구청장
- 다) 사용 또는 사용할 토지소재: 생략
- 라) 위치도및 지적평면도: 생략
- 마)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바) 공람장소: 관악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토목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공고제124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
공 람 공 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59호(83. 3. 19)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구간의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을 수립 도시계획법 제25조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토록 합니다.
2. 토지및 건물 소유자의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 수령자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합니다.

1989. 9.

서 대 문 구 청 장

- 공 람 개 요 -

1. 사업의시행지: 서대문구 남가좌동105의5 ~ 104의23호간
2. 사업의종류및명칭: 도로 및 하수도
3.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 B=8m L=80m 하수도 D=600mm L=80m
4.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90.12.30일까지
5. 공람공고기간: 1989. 9.~9. .
6. 사업의 시행자: 서대문구청장
7. 사용또는 수용할토지, 건물소재지, 지

원,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토지소재: 생략 나. 건물소재: 생략

8. 보상계획

- 가. 대상물건: 생략
- 나. 보상절차
 -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협의계약 체결후 취득
 - 협의불응시 토지수용법 제25조2 및 동법시행령 제77조 규정에 의거 강제 수용
- 다. 보상금 지급 방법
 - 토지: 계약과 동시 전액 지급
 - 건물: 계약과동시70%, 철거완료후 잔액 지급
- 라. 관계도면: 생략

◎서대문구공고제125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
공 람 공 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82호(73.11.26)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구간의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을 수립 도시계획법 제25조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토록 합니다.
2. 토지및건물 소유자의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토목과, 건설관리과에게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합니다.

1989. 9.

서 대 문 구 청 장

- 공 람 개 요 -

1. 사업의시행지: 서대문구 남가좌동 215의56 ~ 206의 13호간
2. 사업의종류및명칭: 도로및 하수도
3.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 B=17m L=170m,

하수도 Box 1.5 × 1.5 L=170m

4.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91.12.30일까지

5. 공람광고 기간: 1989. 9.-9.

6. 사업의 시행자: 서대문구청장

7. 사용토는 수용합토지, 건물소재지, 지면,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가. 토지조서: 생략 나. 건물조서: 생략

8. 보상계획

가. 대상물건: 생략

나. 보상절차

·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협의계약 체결후 취득

· 협의불용시 토지수용법 제25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77조 규정에 의거 강제 수용

다. 보상금 지급 방법

· 토지: 계약과 동시 전액 지급

· 건물: 계약과동시 70%, 철거완료후 잔액지급

라. 관계도면: 생략

◎서대문구공고제126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
공 랑 공 고

1. 건설부고시제177호(62.12.18)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구간의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25조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토록 합니다.

2. 토지및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통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합니다.

1989. 9.

서 대 문 구 청 장

- 공 랑 개 요 -

1. 사업의시행지: 서대문구 냉천동 141의1-총정로동 131외12간

2. 사업의종류및명칭: 도로 및 하수도

3. 사업의규모: 도로 B=12m L=170m, 하수도 D=600% L=170m

4. 사업 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91.6.30까지

5. 사업의시행자: 서대문구청장

6. 사용토는 수용합토지, 건물소재지, 지면,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7. 보상계획

가. 대상물건: 생략

나. 보상시기: 1989. 9.-91. 6. 30

다. 보상절차

·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협의계약 체결후 취득

· 협의불용시 토지수용법 제25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 규정에 의거 수용 및 사용

라. 보상금 지급 방법

· 토지: 계약과 동시 전액 지급

· 건물: 계약과동시 70%, 철거완료후 잔액지급

8. 관계도면: 생략

◎도봉구공고제26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허가에따른
공 랑 공 고

1. 서울시가 시설결정및 지적승인한 다음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에 따른 서류의 공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2에 의거 공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에 공람합니다.

2. 토지(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사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목외에 비취하고 일방에서 동참하고 있으니, 본 사업에 따른 의견을 공란 기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토가. 사업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종류및 명칭	규모	확공	준공	결정고시일자	지적고시일자	
쌍문동256-1 외4필지	도시계획사업(도로) 쌍문동산 68번지의 5필지상 민영주택 도로개설 공사	B=20m L=79m	89. 9. 9	90. 8.30	서고시 제387호 (78.8.3)	서고시 제673호 (78.12.21)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설명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194-15 금호그룹 직장 주택조합의 7개조합다. 사용또는 수용합토지(물건)조서: 생략라. 위치도및 계획평면도: 생략마. 공람기간: 공고일로 부터 14일간바. 공람장소: 도봉구청 토목과사. 기타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토목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89. 9. . 도 봉 구 청 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10px;">사 업 소</div> <p>◎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23호</p> <p>하천점용허가</p> <p>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9. 5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p>				
허가 년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자	
						주 소	성 명
'89.9.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번지선 및 송파구 잠실동 19번지선(한강)	하천	1,163.54㎡ (여의도) 1,201.76㎡ (잠실)	유선장 설치	'89.9.11. '90.9.10 *	인천직할시 북구 삼정동558-10 대리인 강서구 등촌동 515-44	유병언 한형주
◎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24호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p>1989. 9. 5. 한강관리사업소장</p>				

허가 년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자	
						주 소	성 명
'89.9.5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번지선, 송파구 잠실동19번지선, 성 동구 성수동2가 140-2번지선 (한강)	하천	75.96㎡ 여의도25.32 잠실 25.32 독섬 25.32	이동식 음식점 설치	'89.9.6- '90.9.5	인천시 북구 심경동 558-10 대리인 강서구 등촌동 515-44	유병언 한영주
<p>◎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25호</p> <p>하천점용 허가</p> <p>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p>			<p>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 하 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 를 고시합니다.</p> <p>1989. 9. 6.</p> <p>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p>				
			아 래				
허가 년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자	
						주 소	성 명
'89.9.6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여의도동85-1번지 선, 송파구 잠실동19 번지선 성동구 성수동 2가 130번지선(한강)	하천	174.87㎡ 여의도58.29 잠실58.29 독섬58.29	이동 음식점 설치	89.9.13- '89.9.12	인천직할시 남동 구 만수동 산1-2 대리인 용산구 이촌동 300-157	류복수 이동훈
<p>◎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26호</p> <p>하천점용허가</p> <p>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p>			<p>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p> <p>1989. 9. 6.</p> <p>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p>				
			아 래				
허가 년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자	
						주 소	성 명
'89.9.6	서울영등포구 여의 도동85-1번지선 및 송파구 잠실동19번 지선(한강)	하천	1142.4㎡ (여의도) 789.6㎡ (잠실)	유선강 설치	'89.9.11- '90.9.10	인천직할시 남동 구 만수동 산1-2 대리인 용산구 이촌동 300-157	류복수 이동훈

◎1989년9월6일자 4급 기술직공무원 징계처분취소 령제 366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근섭	총무처 소정심사위원회 결정(사건 89-155 89. 8. 30) 에 따라 89. 6. 20자 견책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선유수원지 사무소	지방시설기경	
◎1989년9월9일자 4급 공무원 파견 령제 36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균우	국무총리비서실('89 국정감사 상황실) 파견근무를 명함. ('89. 9. 16 - 10. 10)	내무국	지방서기관	
◎1989년9월8일자 2급공무원 전보 령제 36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의재	감사관에 보함.	성북구청장	이사관	
◎1989년9월13일자 기능직공무원 면직 령제 37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최희진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소방본부	지방교원원 (기능직10등급)	
유홍석	"	경찰국 교통과	지방운전원 (기능직10등급)	
◎1989년9월12일자 4급공무원 파견 령제 37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근배	국무총리비서실('89 국정감사 상황실) 파견근무를 명함. (89. 9. 16 - 10. 10)	마포구 도시정비국장	지방서기관	
이균우	'89. 9. 9자 국무총리비서실 파견을 동일자로 취소함.	내무국	지방서기관	
노원구 공무 국외 여행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명	성명	시찰분야
1	총무국	서기관	김철	인쇄책임자
2	새마을파장	행정사무관	김상식	지방자치제도

연 번	소 속	직 명	성 명	사 랑 분 야
3	총 무 과	행정주사보	박재서	사 회 복 지 공 원 녹 지 도 시 개 발
4	기 회 감 사 과	"	홍성기	
5	하 계 동	동 장	양덕래	
6	상 계 3 동	행정주사보	윤홍중	
7	보 건 소	약 사	권오균	
8	공 원 녹 지 과 장	임 업 기 과	정선용	
9	산 업 과	행정주사보	안현수	
10	상 계 5 동	행정서기	최삼식	
11	주 택 정비 계 장	행정주사	함인수	
12	가 토 정비 계 장	"	서상준	
13	공 통 1 동	"	전성희	
14	토 목 과	토목기사보	박봉수	

공무 국외 여행 명령 취소

여 행 자			여 행 국	여행기간	취소사유	여 행 목 적
소 속	직 명	성 명				
건진생활과	행정사무관	김경근		89.9.10-9.24	한민족의 자유를 위한 1주년 기념행사수진	체육부주관 선진국 체육시설 활용제도 연구
시립운동장장	서기관	신중식				

공무 국외 여행 명령 사항

여 행 자			여 행 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 행 목 적
소 속	직 명	성 명				
동작구	행정사무관 (명단별칭)	이경희 외 7명	싱가폴, 홍콩 대 만	89. 9. 24 - 10. 1 (8일간)	동작구 부 담	동작구 외국도시행정 비교시찰
새종문화회관	서기관	이명우 최홍기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89. 9. 22 - 10. 1 (10일간)	새종문화회관 공연비	서울시립합창단 유럽 순회공연에 따른 사전 현지답사
양천구	건축과 (명단별칭)	박석안 외 9명	싱가폴, 홍콩 대 만	89. 9. 25 - 9. 30 (6일간)	양천구 부 담	양천구 외국도시행정 비교시찰

○ 동천구 의국도시행정비교시정사 명단				
연 번	소 속	직 명	성 명	시 관 분 야
1	총 무 과 장	행정사무관	이 경 희	인솔책임자
2	총무과인사계장	행정주사	태 경 발	지방자치제
3	사 회 복 지 과	행정주사	박 도 관	사회복지
4	삼 도 3 동 장	별정직 5급	한 현 태	일선행정
5	동작동사무소	행정주사보	이 화 용	시민봉사행정
6	재 무 과 장	행정사무관	성 노 영	지방재정운영
7	주 택 과 장	행정사무관	최 중 만	주택건설, 도시계획
8	토 목 과 장	토 목 기사	이 우 형	상하수도시설
○ 양천구 의국도시행정비교시정사 명단				
연 번	소 속	직 명	성 명	시 관 분 야
1	건 축 과 장	건축기과	박 석 안	인솔책임자
2	신 정 1 동 장	별 정 5 급	이 성 재	도시미관
3	인 사 계 장	행 정 주 사	박 창 진	공무원후생복지
4	조 사 계 장	"	박 명 하	"
5	토 목 계 장	토 목 기사	박 형 근	공공시설물관리
6	신정6동사무장	행 정 주 사	황 남 용	지방재정확보방안
7	세 무 1 과	행 정 주 사 보	노 정 일	
8	신 율 5 동	"	홍 광 표	
9	청 소 과	기계기사보	김 덕 유	가로환경정비
10	신 율 5 동	행 정 서 기	김 세 훈	
				서울특별시